



한 국 가 스 공 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6년 12월 천연가스 수입물량 비율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신청 및 안전관리부담금 납부 제외 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천연가스 수입물량 비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톤,%)

구 분	총수입량	국내생산량	LPG사용량	비 율
'16년 12월	3,495,807.063	24,905.680	0.000	99.293%

3. 또한, 2016년 12월 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의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적용 공급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관할 지역본부로, 안전관리부담금 납부 제외 신청은 매월 7영업일까지 도시가스영업팀으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16년 12월 수입부과금 환급 양식 1부.
2. 수입부과금 환급 양식 관련 매뉴얼 1부.
3. 안전관리부담금 제외 물량 확인 양식 1부(해당 도시가스사 별도 송부). 끝.

한 국 가 스 공 사 사 장



수신자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주)에스코, 서울도시가스(주), (주)귀뚜라미에너지, (주)대륜E&S, (주)삼천리, 인천도시가스(주), (주)부산도시가스, 대성에너지(주), (주)해양도시가스, (주)충남도시가스, (주)경동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중부도시가스(주), 전북도시가스(주), 군산도시가스(주),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목포도시가스(주), 전남도시가스(주), 대화도시가스(주),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서라벌도시가스(주), 경남에너지(주), (주)지에스이, 강원도시가스(주),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참빛충북도시가스(주), 참빛영동도시가스(주), 대성청정에너지(주), (주)미래엔서해에너지, 참빛도시가스(주), 명성파워그린(주)

과장 최 승 팀장 전결 01/03
김기표

협조자

시행 도시가스영업팀-15 (2017.01.03.) 접수
우 41062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 <http://www.kogas.or.kr>
전화 (053)670-0897 전송 - / / 공개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정부 3.0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